



대전광역시 대덕구



수신 관내 700세대 이상 층간소음관리위원회설치 의무단지 관리주체 귀하
(경유)

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,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 제출 요청
(`21년 ~ `24년)

1. 공동주택 주거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층간소음(간접흡연)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에 대해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0조(층간소음의 방지 등)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(7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층간소음(간접흡연)관리위원회를 구성(`24.10.25.개정)해야 합니다.
3. 관리주체가 수행한 층간소음, 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(`21년 ~`24년)을 조사하고자 하오니, 아래 서식 다운로드 방법을 참고하시어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 후 **2026. 5. 19.(화)까지 이메일(luluby02@korea.kr)로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서식 다운로드 방법

다운로드 방법	대덕구 홈페이지(www.daedeock.go.kr) 접속 → '덕구네 공동주택' 검색 → 메뉴(도시포털>건축·통신>건축·주택>덕구네 공동주택) 클릭 → '공동주택 층간소음,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현황 제출 요청(`21년 ~ `24년)' 확인
--------------------	--

끝.

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



주무관

김수민

주택관리팀장

김연우

주택경관과장

전결 2026. 5. 18.

박경하

협조자

시행 주택경관과-23373

(2026. 5. 18.)

접수

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, (오정동)

/ <http://www.daedeok.go.kr>

전화번호 042-608-4163

팩스번호 042-608-3843

/ luluby02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친절한 공감행정 대덕이 함께 합니다.